#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700 발의연월일: 2025. 1. 22.

발 의 자:박지혜·허 영·김성환

조인철 • 이건태 • 위성곤

황명선 • 이재강 • 허성무

이소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하고 희생한 지 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과 낙후된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 되었음.

그럼에도 반환공여구역 토지를 매입하기 전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상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부지 일부를 임시 사용하여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큰 재정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임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

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국유지의 무상대여·양여) 국가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14조의2(국유지의 무상대여ㆍ
	양여) 국가는 반환공여구역내
	의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
	<u>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u>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
	<u>다.</u>